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규선 의원 발의】



2021. 6. 2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51호로 2021년 6월 7일 이규선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안 제3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안 제4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 홍보 및 안전교육(안 제5조 ~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1. 6. 4. ~ 6. 8. / 5일 간)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이고 8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홍보와 안전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6만대 정도였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2019년에는 9만대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2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용자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어 2021. 5. 13.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금지와 주행 가능도로 지정, 그리고 안전장구 착용의무 등 안전이행 조치가 강화되었음.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와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